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0가합105683 판결 [매매대금 등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선규, 이용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아름, 하재민, 곽상기, 김소희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대구 서구 E 공장용지 675㎡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F에게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여 받은 18억 원 중 6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억 5,000만 원(= 10억 5,000만 원 +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공장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 있었다가 이 사건 공장은 2018. 9. 11. F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9. 13.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소유자 내지 매도인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은 2022. 7. 12. 원고 청구 기각 판결(2020드합40610호)을 하면서 '이 사건 공장은 피고가 명의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였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공장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모두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라면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라면 쉽게 설명 가능한 점, ④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장 매매대금의 잔금 16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그 중 6억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F로부터 16억 원을 은행으로 송금받은 후 그 전부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그 자기앞수표 중 8억 원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공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사건

공장의 매도대금 중 6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철, 판사 박창희, 판사 임휘재